

입학 신청 안내

꼭 읽어 주십시오

본교는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어 학습의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적절한 학습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학 선발도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교에 입학할 지망하는 학생은 구비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 책자를 잘 읽고 적절하게 수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수속의 순서는 별지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비자 이외에 비자를 스스로 취득하여 입학할 경우는 본교를 통해서 입국관리국으로 신청할 수가 없으므로 사전에 상담 바랍니다.

1. 입학 심사(유학 비자) 내용

본교에서는 입학 심사를 하기의 3개 관점에서 실시합니다.

1.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일본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경위나 동기,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확실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또 왜 다른 나라 아닌 일본에서 공부하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경비지변자(경비지불자)의 경제 능력이 충분한지의 여부

*경비지변자는 신청자 부모나 그와 동등한 관계자이며 유학 경비를 당연히 지불해야 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신청자가 일본에 체류하는 중,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없이 지불할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경비지변자...다음 페이지 “용어에 대하여”참조.

용어에 대하여

★경비지변자(경비지불자)

학생이 일본 체류중에 학비,생활비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직장인 경험이 많은 사람은 신청자 본인도 가능). 국적,거주지는 상관없으나 충분한 저축과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되며 신청자 부모를 대신할 정도 그 관계가 깊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재류자격(체류 자격)과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일본 체제를 인정받은 자격을 재류자격이라고 하고 본교에서 장기적으로 공부할 경우는 “유학”라는 재류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본교 서류심사에 합격되면 그 서류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하고 그 심사에 합격하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유학비자의 학생은 본교에서 학업에 전념해야 하고 그 외의 활동, 특히 보수를 받는 활동(취업)을 할수는 없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활동 시간도 법률로 제한됩니다. 또 유학비자는 신청한 코스 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재류기간이 주어지는데 출석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나 학비,생활비의 송금 사실을 증명할수 없는 사람은 비자 갱신,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이 어렵게 됩니다.

II. 서류작성에 대한 주의사항

1. 이전에 학생(취학, 유학)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 사람은 꼭 미리 신고해 주십시오.
2. 모든 신청 서류는 빠짐없이,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3. 허위적인 내용과 위조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후 입국할수 없게 됩니다.
4. 증명서, 사진은 모두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합니다.
5. 잘못 쓴 부분을 고칠 경우는 화이트펜 사용은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6. 입학원서, 취학이유서, 기타 신청자 본인에 관한 이유서는 꼭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또 경비지불서나 경비에 대한 이유서는 꼭 경비지번자(부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7.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모두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밝혀 주십시오.

※일단 제출한 서류는 심사 결과 여부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졸업증서와 같이 한번 밖에 발급되지 않는 증서 원본등은 반환해 드립니다.

1. 신청자 본인이 구비할 서류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모두 신청자 본인이 기입해야 합니다.
- *경력 사항(학력, 직력, 일본어학습, 출입국등)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 *경력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무엇을 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입학, 졸업 연월일은 증명서와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 *학교, 직장 소재지는 “-시, -동”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② 지망 이유서(소정양식)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한국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일본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경위와 이유, 무엇을 목표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상세하게 써 주십시오. 또 일본어학교 수료후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용지가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첨부해도 됩니다.
- 특히 최종출신학교를 졸업한지 5년 이상 경과한 신청자에게는 명확한 취학 이유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없으면 유학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③ 사진(4cm×3cm) 5매

- *모든 사진 뒷면에 이름과 국적을 기입, 그중 한장을 입학원서에 붙여 주십시오.

④ 최종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서 복사본

⑤ 일본어 학습 경력 증명서

- *학교나 일본어학원에서 공부한 증명서 혹은 일본어능력시험 4급 합격 이상인 증명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 *본교에 입학할 시점에 150 시간정도 학습 경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습 경력이 부족한 사람은 일본어학원에서 공부해 주십시오.

⑥ 기타... 과거에 일본체류 경력이 있는 신청자

- *여권 취득자는 사진 페이지와 일본 출입국 기록이 있는 모든 페이지
- *일본 출입국 경력이 많거나 한달 이상의 체류가 과거에 있는 사람...
출입국 이유서(체류 이유, 체류처, 관계자와 그 연락처등을 상세하게 설명)를 작성하고 한국의 출입국관리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 ***특히 단기 체류 비자로 1달 이상 체류 경력이 있으면 심사가 엄해 집니다.

2. 경비지불자(학비, 생활비 지불자)의 구비서류

A. 신청자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 ①경비지불서(経費支弁書=소정양식) 반드시 본인이 기입해야 합니다.
- ②본인 명의로 된 예금잔고증명서
 ……유학의 필요한 경비가 충분히 있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③직업증명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등)
 근무처명, 주소, 전화번호, 발급일, 책임자명이 명기된 것이 필요합니다.(최종 직장)

B. 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

- ①경비지불서(経費支弁書=소정양식) 반드시 경비지불자 본인이 기입해야 합니다.
- ②경비지불자 명의로 된 예금잔고증명서
 …유학의 필요한 경비가 충분히 있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③직업증명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등)
 근무처명, 주소, 전화번호, 발급일, 책임자명이 명기된 것이 필요합니다.(최종 직장)
- ⑤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별지 "한국의 친척관계 증명에 대하여" 를
 참고로 해당되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C.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

- ①경비지불서(経費支弁書=소정양식) …반드시 경비지불자 본인이 기입해야 합니다.
- ②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별지 "한국의 친척관계 증명에 대하여" 를
 참고로 해당되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 ③경비지불자의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하기 서류 중 하나)
 - a. 연간 소득액이 명기된 납세증명서(소득세)
 - b. 확정신고(確定申告)의 신고필증(세무인이 찍어진 것)
 - c.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참고자료로서 경비지불자 명의로 된 은행잔고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④경비지불자의 직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하기 서류중 하나)
 - a. 회사원,공무원인 경우는 재직증명서
 - b.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확정신고(確定申告)의 신고필증(세무인이 찍어진 것)
 ※③의 b로 준비할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c. 회사 대표자나 임원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 ⑤등록원표기재사실증명서(登録原票記載事実証明書)
 =주민표등본(동일세대 전체가 기재된 것), 외국인 경우는 외국인등록필증명서

3. 긴급연락인 및 일본국내연락인 등록에 관한 안내

별지 「긴급연락인 및 일본국내연락인 등록표」로 아래와 같이 등록해주시요.

1. 긴급연락인의 등록 (모든 지원자)

긴급연락인으로서 지원자 가족 혹은 친척 관계자 중 2 명을 등록해 주십시오. 긴급연락인의 현거주지는 한국, 일본 혹은 그 외 지역도 가능합니다.

2. 일본국내연락인의 등록 (해당자만)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 주십시오.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3.에 기재된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 위에 기재된 긴급연락인이 일본국내에 거주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일본 국내 연락인을 겸할 수 있습니다.

★일본국내연락인의 요건

- ① 지원자 가족, 친척 혹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
- ② 단기채류 이외의 채류자격으로 1 년 이상 일본에 채류 중인 자. 연락인의 채류(예정) 기간은 지원자의 채류기간보다 장기간이 되어야 한다. 단, 일본국적을 가진자를 제외함.
- ③ 학교측 필요에 따라서 지원자 및 그 가족과 신속히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자.
- ④ 만 20 세 이상인 자.

3. 일본국내연락인이 없는 경우

(1) 지원자 본인 및 본국의 부모/친척은 본 학교 교장 앞으로 입학 전에 “서약서”(소정 양식)를 제출해 주십시오. 단, 지원자 외에 부모/친척 중 최소 2 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2) 재학중은 학교가 지정한 학생기숙사에 거주하여 기숙사 월세 6 개월 분을 선납해야 합니다. 학교지정 기숙사는 아래 ①~④이며 **상세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① とやま荘、 ② シャト-今里、 ③ キャンパス八戸ノ里、 ④ レガ-レ谷町
 토야마 장 샤토 이마자토 캠퍼스 야에노사토 레가레 타니마치

(3) 지원자 본인은 재학기간 중은 학교와 연락이 항상 가능한 휴대전화를 가져야합니다.